

「군수품 품질경영 기본규정」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8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제7조의 품목특성에 따라 분류된 품질보증형태(I형, III형, IV형)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각 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u>품질경영운영실</u>로 제출한다. 2. <u>품질경영운영실</u>은 각 센터로부터 접수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를 종합하여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품질경영실무위원은 센터 팀장과 <u>품질경영운영실</u>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별표 제1-3호 참조). 1. 계약업체는 매 당해년도 확정된 품질보증형태 III형, IV형 품목 중에서 정부품질보증 생략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기품원 해당센터로 제출한다. 2. (생략) 3. 센터는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선택품질보증형 적용가능 품목에 대	제8조(품질보증형태 검토) ① 제7조의 품목특성에 따라 분류된 품질보증형태(I형, III형, IV형)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 1. 각 전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정부품질보증 수행결과 및 품목의 특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검토한 후 <u>품질경영부</u>로 제출한다. 2. <u>품질경영부</u>는 각 센터로부터 접수된 품목의 품질보증형태를 종합하여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이 경우 품질경영실무위원은 센터 팀장과 <u>품질경영부</u> 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현행과 동일) ③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별표 제1-3호 참조). 1. 계약업체는 매 당해년도 확정된 품질보증형태 III형, IV형 품목 중에서 정부품질보증 생략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기품원 해당센터로 제출한다. 2. (현행과 동일) 3. 센터는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선택품질보증형 적용가능 품목에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현 행	개 정(안)	비 고
한 검토결과를 <u>품질경영운영실</u>로 제출한다. 4. <u>품질경영운영실</u>은 센터의 제출자료를 종합·검토하여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품목을 방위사업청에 승인 의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승인내용이 접수되면 해당센터로 통보한다. ⑤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지정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센터는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에 대하여 지정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내용을 관련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지정변경에 대한 계약업체 의견을 접수·검토 후 <u>품질경영운영실</u>로 제출한다. 2. <u>품질경영운영실</u>은 선택품질보증형품목 지정변경에 대하여 센터의 검토내용을 종합·검토하여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지정 변경 내용이 접수되면 센터로 통보한다.	대한 검토결과를 <u>품질경영부</u>로 제출한다. 4. <u>품질경영부</u>는 센터의 제출자료를 종합·검토하여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품목을 방위사업청에 승인 의뢰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승인내용이 접수되면 해당센터로 통보한다. ⑤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의 지정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센터는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에 대하여 지정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내용을 관련 계약업체에 통보하고, 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지정변경에 대한 계약업체 의견을 접수·검토 후 <u>품질경영부</u>로 제출한다. 2. <u>품질경영부</u>는 선택품질보증형품목 지정변경에 대하여 센터의 검토내용을 종합·검토하여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에 제출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택품질보증형 품목지정 변경 내용이 접수되면 센터로 통보한다.	
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① <u>품질경영운영실</u>은 매년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② (생략)	제9조(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 조사) ① <u>품질경영부</u>는 매년 「군수품 생산업체 품질수준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② (현행과 동일)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10조(군수품 품질보증기본계획(안) 작성) ① <u>품질경영운영실</u>은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3년 주기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② (생략)	제10조(군수품 품질보증기본계획(안) 작성) ① <u>품질경영부</u>는 방위사업청에서 제시하는 작성지침에 따라 3년 주기로 「군수품 품질보증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② (현행과 동일)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 ① <u>품질경영운영실</u>은 3년 주기로 「군수품 품질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② (생략)	제11조(군수품 품질조사서 작성) ① <u>품질경영부</u>는 3년 주기로 「군수품 품질조사서」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에 제출한다. ② (현행과 동일)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제12조(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 ① (생략) ② <u>품질경영운영실</u>에서는 매년 수행하는 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과제를 종합하여 관리한다.	제12조(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 ① (현행과 동일) ② <u>품질경영부</u>는 매년 수행하는 군수품 품질경영 선진화 정책 연구과제를 종합하여 관리한다.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제19조(위험식별 및 평가) ① ~ ⑥ (생략) ⑦ 담당직원은 위험에 대한 위험등급이 결정되면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방법은 위험통제(Risk Control), 위험회피(Risk Avoidance)로 해당 관리방법에 따른 처리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의 정부품	제19조(위험식별 및 평가) ① ~ ⑥ (생략) ⑦ 담당직원은 위험에 대한 위험등급이 결정되면 위험에 대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방법은 위험통제(Risk Control), 위험회피(Risk Avoidance)로 해당 관리방법에 따른 처리방안을 정하여야 한다. 1. 위험통제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또는 감소하는 방법이며, 처리방안은 식별된 위험요소 및 등급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검토, 제품확인감사의 정부품	

현 행	개 정(안)	비 고
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u>수행한다.</u> 2. (생략) ⑧ (생략) <신 설> ⑨ (생략)	질보증 방법 및 심도 등을 정하여 <u>수행하며 고위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품질보증 대상으로 선정 한다.</u> 2. (생략) ⑧ (생략) ⑨ 2년 이상의 장기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최초 수행 후 6개월 단위로 위험평가를 재수행하여야 하며, 수행결과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정부 품질보증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⑩ (생략)	- 위험평가 내실화를 위해 고위험 사항 정부 품질보증 대상 선정 원칙 명시 - 위험평가 내실화를 위해 장기 계약품목에 대한 재평가 사항 추가
제20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① (생략) ②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품보계획서를 센터장(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센터장(팀장)은 필요시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계약내용 및 정부품질보증 승인(정부품보계획서 표지) 2.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별지 제3-1호 서식) 3. 정부품질보증 대상(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 가. ~ 나. (생략) 다. 제품확인감사 <u>적용규격 및 감사대상 품목선정, 감사방법 및 내용, 샘플링방법 등을 포함하며,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품목은 필요시</u>	제20조(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① (생략) ② 담당직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부품보계획서를 센터장(팀장)의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해당 센터장(팀장)은 필요시 품질경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품보계획서를 확정할 수 있다. 1. 계약내용 및 정부품질보증 승인(정부품보계획서 표지) 2. 위험식별 및 처리방안(별지 제3-1호 서식) 3. 정부품질보증 대상(위험식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범위 조정) 가. ~ 나. (생략) 다. 제품확인감사 (1) <u>제품확인 감사 계획은 감사대상품목 선정, 제품감사 시 적용규격, 방법 및 내용, 샘플링 방법 등을 포함한다.</u>	- 자체감사결과 반영 및 문구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u>감사대상(신뢰성 시험 실시 여부 등)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로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u>	(2) 샘플링은 로트로 생산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별표 제3-4호의 방법을 따른다. (3) 내장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품목은 필요시 감사대상(신뢰성 시험 실시 여부 등)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부로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제23조(제품확인감사) ① (생략) ② 담당직원이 실시하는 제품확인감사 범위는 승인된 정부품보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으로 <u>실시한다.</u> ③ 계약업체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합격품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하며 <u>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8조의 절차에 따른다.</u> 1. 제품확인감사 의뢰 가. ~ 나. (생략) 2. 최초생산품 가. (생략) <신 설>	제23조(제품확인감사) ① (현행과 동일) ② 담당직원이 실시하는 제품확인감사 범위는 승인된 정부품보 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또는 항목)과 방법으로 실시하며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은 제28조의 절차에 따른다. ③ 계약업체는 계획된 생산일정에 따라 합격품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확인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제품확인감사 의뢰 가. ~ 나. (현행과 동일) 2. 최초생산품 가. (현행과 동일) 나. 각 센터는 규격에 따라 최초생산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질 충족여부 (2) 생산장비, 치공구, 시설	- 적용대상 오류 수정 (정부 품질보증 활동 시 적용되는 사항이나 업체관련 사항에 포함됨) - 최초 생산품 품보 착안사항 추가 및 자동 시험장비 등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 적용

현행	개정(안)	비고
나. (생략) 3. 초도양산품 가. ~ 다. (생략) 라. 각 센터는 규격에 따라 초도양산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 (5) (생략) <신설> 마. 각 센터는 초도양산 품질 보증 결과를 다음의 기관에 제출하며, 초도양산 결과 도출된 보완사항은 후속양산 정부품보계획에 반영한다. (1) 초도양산품 정부품질보증결과(이하 '정부품보결과'라 한다) :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 및 계약관리본부) (2) 운용시험결과 기준 마달 및 보완사항 확인결과 (단, 기술교범 등 종합군수자원분야는 소요군에서 결과 통보) : 합참(시험평가부), 방위사업청(통합사업관리팀 및 계약관리본부) 및	및 시험장비 등의 완비여부 (3)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다. (현행과 동일) 3. 초도양산품 가. ~ 다. (현행과 동일) 라. 각 센터는 규격에 따라 초도양산품에 대한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 (5) (원안과 동일) (6) 자동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 <삭제>	- 자동 시험장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방위사업관리 규정 개정사항 반영 (초도양산 관련 조항 삭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소요군 4. 양산제품 가. (생략) 나. 담당직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수행내용 및 결과는 <추가>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추가> 기록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정부품질보증일지에 정부품질보증 결과 기록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품질증빙자료에 기록·유지 할 수 있다. 다. ~ 바. (생략) <신 설>	4. 양산제품 가. (현행과 동일) 나. 담당직원의 정부품질보증은 정부품보계획에 의거 실시하며, 수행내용 및 결과는 품질보증활동 완료 후 신속히 품질보증활동관리시스템의 "정부품질보증일지"에 기록하며 납품 전에 기록 누락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정부품질보증일지에 정부품질보증 결과 기록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품질증빙자료에 기록·유지 할 수 있다. 다. ~ 바. (원안과 동일) 사. 담당직원은 필요시 자동 시험장비를 포함한 시험 및 측정장비의 유효성과 검교정 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정부 품질 보증 일지 작성누락 방지를 위해 조기작성 원칙 및 납품전 누락여부 확인절차 추가 - 자동 시험장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제24조(시정조치) ① ~ ④ (생략)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적용하며, 시정조치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u>요구한다</u>. 1. 제 1 방법 ~ 3. 제 3 방법 (생략)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제24조(시정조치)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시정조치 방법은 시정조치 요구내용의 중요성 및 시정조치 빈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 적용하며, 시정조치 사유, 발생일자, 회신기간 등을 정하여 요구하며 해당품목의 납품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 제 1 방법 ~ 3. 제 3 방법 (현행과 동일) 4. 제 4 방법 계약요구조건에 일치하는	- 시정조치 완료 지연 방지를 위해 완료 시기 명시

현행	개정(안)	비고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u>계약업체에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계약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u>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업체가 품질보증 노력이 없어 제품 품질보증이 어려울 경우 또는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단순 행정착오 등 제외)을 발견하였을 경우의 시정조치로서 센터장은 <u>계약업체의 해당계약건에 대한 모든 품질보증활동의 일시 중단을 통보하고, 계약이행 불가사항을 검토하여 계약기관에 통보하고, 계약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한다.</u>	- 적용 범위 명확화
제25조(규격불일치품) ① (생략)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u>정부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락될 수 있으며 수락여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u>	제25조(규격불일치품) ① (현행과 동일) ② 규격불일치품은 원칙적으로 수락될 수 없다. 다만 규격불일치품이라 하더라도 경제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u>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 「표준화 업무지침」에 따라 형상관리부서의 규격완화 또는 면제 처리가 필요하며 수락여부는 정부의 고유 권한이다.</u>	- 불합격품 처리 관련 업무처리 절차 추가 (형상관리와 연계)
제27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업체는 <추가> 자체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국과연, 각 군 또는 관련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시험의뢰를 위한 협조 요청 시 센터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제27조(외부기관 시험의뢰) ① 계약업체는 <u>자체 품질확인</u> 시설 또는 인력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확인이 불충분할 경우, 해당시험을 국과연, 각 군 또는 관련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시험의뢰를 위한 협조 요청 시 센터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 적용 범위 명확화 (업체 자체 품질보증 시 업무절차)

현 행	개 정(안)	비 고
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품원 예산을 사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④ <추가> 담당직원은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체계에 등록된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 시 군수품 시험성적서정보체계를 사용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함에 있어 업체가 제출한 성적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공인시험기관 시험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품원 예산을 사용하여 시험분석을 할 수 있다. ④ 상기 제3항의 경우 담당직원은 군수품 시험성적서 정보체계에 등록된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 시 군수품 시험성적서정보체계를 사용하여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① <추가>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신 설> ② (생략)	제28조(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① 정부품질보증활동을 위한 이화학시험 및 측정 등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5. (현행과 동일) 5. 선택품질보증형(Ⅱ형)의 증빙서류 확인 대상 중 국과연, 기품원에서 운영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험이 필요한 경우 담당직원은 해당 시험기관에 시험 및 측정을 의뢰한다. ② (현행과 동일)	- 적용 범위 명확화 (정부 품질보증 적용 업무절차)
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 ① 계약업체는 <u>합격품과 불합격품을 분리하고 식별표기를 하여 관리해야 한다.</u>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제29조(합/불합격품 처리) ① 계약업체는 제1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문서 제출 시 국방품질경영체제 요구사항(KDS 0050-9000) 8.7.3(불합격품의 관리))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 후 재고량은 품질이 변질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약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업체품보계획서에 재고품의 사용계획	- KDS 0050-9000 개정(불합격품 관리 사항 추가)에 따라 중복 제출 방지를 위해 일원화

현 행	개 정(안)	비 고
② 담당직원은 업체로부터 불합격품의 처리방안을 문서로 접수하고 타당할 경우에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단, 불합격된 품목이 민수용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군용표시 제거, 형태 또는 색상의 변경 등으로 군수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담당직원은 필요 시 업체 품질보증계획서의 불합격품 관리방안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단 업체는 불합격된 품목을 민수용으로 전환할 경우 군용표시를 제거하여야 하며, 「군복 및 군용장부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해당될 경우 동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 문구 명확화
제35조(하도급품) ① ~ ⑥ (생략) ⑦ 정부품질보증을 위탁할 경우 위탁센터는 수탁센터와 협조하여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며 수탁센터에 다음사항을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의뢰한다. 1. 정부품질보증 의뢰내용(의뢰사유 포함) 가. 위탁품목(필요시 체계연동 사항 포함)의 위험 식별내용 나. 사용자불만처리 위·수탁 관련 업무 다. 형상통제 위·수탁 관련 업무 2 하도급 계약서 사본 3.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의 품질보증 계획 4. 정부품질보증 관련 자료 <신 설>	제35조(하도급품) ① ~ ⑥ (현행과 동일) ⑦ 정부품질보증을 위탁할 경우 위탁센터는 수탁센터와 협조하여 정부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며 수탁센터에 다음사항을 첨부하여 정부품질보증을 의뢰한다. 1. 정부품질보증 의뢰내용(의뢰사유 포함) 가. 위탁품목(필요시 체계연동 사항 포함)의 위험 식별내용 나. 사용자불만처리 위·수탁 관련 업무 다. 형상통제 위·수탁 관련 업무 2 하도급 계약서 사본 3. 계약업체 및 협력업체의 품질보증 계획 4. 정부품질보증 관련 자료 ⑧ 수탁센터는 위탁품목에 대한 정부품질보증활동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위탁센터로 통보한다.	- 위탁품에 대한 품질보증결과 통보절차 추가
제39조(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 ① 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은 이 규정을 적용하되 이 조항	제39조(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 ① 구매계약 품목 정부품질보증은 이 규정을 적용하되 이 조항	

현행	개정(안)	비고
을 우선 적용한다. ② <u>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시 구매계획, 품질보증 준비현황, 구매업체 일반현황을 제출하되 필요시 센터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u> ③ (생략)	을 우선 적용한다. ② <u>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센터는 필요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u> 1. 구매계획 · 구매방안(구매선 등) 및 일정(계약서 특수조건에 명시된 국산화완료품목 의무 사용계획, 소프트웨어 확보계획 등) · 품질보증 계획 2. 품질보증 준비현황 · 구매선의 주요 생산 시설 현황 · 계약업체의 품질관리 인력현황 3. 업체일반현황 · 주요취급품목, 인허가현황, 연 매출액, 자본금, 종업원수, 임원 현황, E-Mail주소 등 ③ (현행과 동일)	- 구매계약 특성을 고려 구성내용 구체화
제40조(품질기동지원활동) ① <u>품질기동지원활동은 규격 개선, 양산품 생산장애요인 개선, 부품 및 소재류에 대한 품질신뢰도 검증 등으로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제반 개선활동을 포함한다.</u> ② 센터는 <u>협력업체 및 필요시 계약업체에 대한 품질기동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u>	제40조(현장품질지원활동) ① 센터는 불합리한 규격의 도출과 개선, 품질 시스템 평가를 통한 업체 경영체계 또는 공정개선, 업체 애로사항 해소, 부품 및 소재류에 대한 품질신뢰도 검증을 위해 <u>현장품질지원활동은 수행할 수 있다.</u> ② <u>현장품질지원활동 신규 계약·영세 중소기업체 대상으로 수행하며, 필요 시 협력업체를 포함할 수 있다.</u>	- 품질기동지원활동 업무개선 및 명칭 변경 사항 반영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42조(품질개선) ① 품질개선은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이다. ② 센터는 생산과정이나 납품 후 사용자불만, 품질정보 등을 통하여 품질개선 사항을 인지한 경우 품질개선을 수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센터는 품질개선을 위하여 장기간 소요되거나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경영운영실과 협조하여 방위사업청에 성능개량 사업 추진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42조(품질개선) ① 품질개선은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둔 품질경영의 일부이다. ② 센터는 생산과정이나 납품 후 사용자불만, 품질정보 등을 통하여 품질개선 사항을 인지한 경우 품질개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품질개선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매분기말 까지 품질경영부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경영부는 이를 검토하여 품질개선과제 추진 여부를 정한다. ④ 품질경영부는 품질개선과제 추진에 예산이 소요될 경우 가용범위 내에서 해당과제에 예산을 배정하며 품질개선 범위가 경우 방위사업청에 성능개량 사업 추진을 요청한다. ⑤ 센터는 품질개선과제가 완료되면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품질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품질개선 수행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까지 관리 체계구축
제43조(연구개발단계 참여 및 지원) ① <u>품질경영운영실</u> 및 각 센터는 연구개발장비(성능개량 사업 포함)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준비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경우는 체계개발단계부터 품질보증계획 수립 협조, 개발회의 및 시험 참여, 규격화 검토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는 “전력지원체계 개발기술지원 업무요령”에 따른다. ②~③ (생략)	제43조(연구개발단계 참여 및 지원) ① <u>품질경영부</u> 및 각 센터는 연구개발장비(성능개량 사업 포함)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준비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경우는 체계개발단계부터 품질보증계획 수립 협조, 개발회의 및 시험 참여, 규격화 검토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력지원체계의 경우는 “전력지원체계 개발기술지원 업무요령”에 따른다. ②~③ (현행과 동일)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현 행	개 정(안)	비 고
제8장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 제55조(기본방침) ①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정부품질보증은 제3장 품질보증 업무에 따라 수행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 물량의 증가, 요구납기의 긴급성 등이 발생될 때 효율적인 품질보증체계 및 방법을 구축하여 수행한다. ② 전시 정부품질보증을 위해서 기품원은 부서의 편성, 사태 단계 및 긴급도별 활동내용 등은 평시에 사전 준비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하며, 세부 사항은 전시품질보증계획서에 따른다.	제8장 전시동원물자 품질보증 제55조(기본방침) ① 전시의 정부 품질보증활동은 평시와 동일하게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전시 중앙조달 물자에 소요 긴급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수행한다. 1. 초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전체 생략 시 납품가능) : 제반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2. 긴급(정부 품질보증활동 일부 생략 시 납품가능) : 일부 품질보증활동을 생략 3. 정상 : 평시 절차 적용 ② 품질경영부는 신속한 전시 체계전환을 위해서 사전에 전시 센터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 방위사업관리 규정의 전시 품질보증 방침을 기준으로 구체화 - 업무 주관부서 명시 및 수행 업무명확화를 위한 문장순화
제56조(업무처리 절차) ① 품질경영운영실은 전산자료를 입수하여 다음과 같이 전환하고 센터에 통보한다. 1. 국방부에서 엑셀자료를 입수하면, 정보화기획실의 지원을 받아 각 항목의 오류 여부를 검토 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한다. 2. ~ 5. (생략) ② 센터는 전산자료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고 품질경영운영실로 통보한다. 1. 품질경영운영실로 부터 화일(전동물.mdb)을 입수하여,	제56조(전시 품질보증계획수립) ① 품질경영부는 매년 전시 동원물자와 방산물자 소요가 국방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통보되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전시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② 품질경영부는 통보된 전시 품질보증 대상 품목을 센터별로 배정한 후 센터에 품목별 전시 품질보증계획 수립을 요청한다.	- 방위사업관리 규정 개정사항 반영 (전시 품보대상에 방산물자 추가에 따라 동원물자와 방산물자로 구분) - 프로그램 사용 절차 등 규정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보완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현 행	개 정(안)	비 고										
하드디스크에 복사 (c:\전동물\전동물.mdb)한다. 2. 해당 시·도에서 통보한 「산업자원동원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각 센터는 해당 동원품목의 동원정보를 입력한다. 이때 품질경영운영실에서 접수한 화일에 없는 품목은 기품원에서 정부 품질보증을 수행하는 동원 물자가 아니므로 해당 「산업자원동원 시행계획」에 수록되어 있어도 입력하지 않는다. 3. 입력이 종료되면 품질경영운영실 전송화일을 생성(엑셀)하여 디스켓에 저장 후 품질경영운영실로 통보한다. 4. ~ 5. (생략) ③ 품질경영운영실은 출력자료를 다음과 같이 편집한다. 1. ~4. (생략)	③ 각 센터는 품목별 정부품질보증 증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품질 경영부로 제출한다. ④ 품질경영부는 각 센터에서 제출된 품목별 정부품질보증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시 품질보증계획을 확정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 품질경영부										
【별표 제1-3호】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선정/ 변경 절차 <u>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선정/변경 절차</u> <table><tr><td>단계</td><td>업체</td><td>센터</td><td>품질경영본부 (품질경영운영실)</td><td>방위사업청</td></tr></table>	단계	업체	센터	품질경영본부 (품질경영운영실)	방위사업청	【별표 제1-3호】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선정/ 변경 절차 <u>선택품질보증형 품목 선정/변경 절차</u> <table><tr><td>단계</td><td>업체</td><td>센터</td><td>품질경영본부 (품질경영부)</td><td>방위사업청</td></tr></table>	단계	업체	센터	품질경영본부 (품질경영부)	방위사업청	- 조직개편 사항 반영 (품질경영운영실 → 품질경영부)
단계	업체	센터	품질경영본부 (품질경영운영실)	방위사업청								
단계	업체	센터	품질경영본부 (품질경영부)	방위사업청								

【별표 제3-4호】 샘플링 수행 기준

샘플링 수행 기준

☐ AQL 선정 기준

1. 규격이나 계약서에 AQL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선정
2. 규격이나 계약서에 AQL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특성을 따른다

품목 특성	검사수준	AQL(%)
치명안전품목 (고장이나 오작동 시 인명피해(사망 또는 중상 또는 중대한 질환), 장비 망실·심각한 손상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작동 중단이 발생하는 품목)	기본	0.40
	까다로운 검사	0.25
	수월한 검사	허용안함
치명안전 품목을 제외한 복잡하거나 핵심적인 품목	기본	1.0
	까다로운 검사	0.65
	수월한 검사	1.5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	기본	4.0
	까다로운 검사	3.5
	수월한 검사	6.5

☐ 샘플링 계획

Lot Size	합격품질한계 (AQL%)															
	.010	.015	.025	.040	.065	.10	.15	.25	.40	.65	1.0	1.5	2.5	4.0	6.5	10
1-8		A	A	A	A	A	A	A	A	A	A	A	5	3	2	2
9-15	A	A	A	A	A	A	A	A	A	A	13	8	5	3	2	2
16-25	A	A	A	A	A	A	A	A	A	20	13	8	5	3	3	2
26-50	A	A	A	A	A	A	A	A	32	20	13	8	5	3	3	2
51-90	A	A	A	A	A	A	80	50	32	20	13	8	7	6	5	4
91-150	A	A	A	A	A	125	80	50	32	20	13	12	11	7	6	5
151-280	A	A	A	A	200	125	80	50	32	20	20	19	13	10	7	6
281-500	A	A	A	315	200	125	80	50	48	47	29	21	16	11	9	7
501-1200	A	800	500	315	200	125	80	75	73	47	34	27	19	15	11	8
1201-3200	1250	800	500	315	200	125	120	116	73	53	42	35	23	18	13	9
3201-10,000	1250	800	500	315	200	192	189	116	86	68	50	38	29	22	15	9
10,001-35,000	1250	800	500	315	300	294	189	135	108	77	60	46	35	29	15	9
35,001-150,000	1250	800	500	490	476	294	218	170	123	96	74	56	40	29	15	9
150,001-500,000	1250	800	750	715	476	345	270	200	156	119	90	64	40	29	15	9
500,001 이상	1250	1200	1112	715	556	435	303	244	189	143	102	64	40	29	15	9

* A로 표시된 구간은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수량 전체가 규격을 충족할 경우 대상 로트 합격

** 불합격 시 시정조치 후 재검사, 재검사 시 검사수준 조정 또는 규격 등에서 정한 방법 적용(기준이 있는 경우)

*** 품질보증 계획 수립 시 상기 표 대신 규격 또는 계약에서 정한 표를 적용할 수 있음 (예 KS Q ISO 2589-1)